

교대제 개편, 실 근로시간 단축제, 일자리 순환제

● 지원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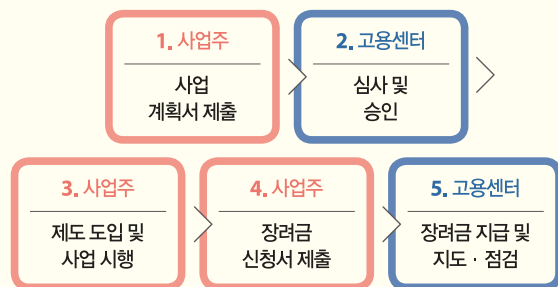


구분		신규채용 인건비	임금보전
		1명 당, 1개월, 최대금액	
비 제 조 업	우선지원 대상기업	80만원, 1년	40만원, 1년
	중견기업	40만원, 1년	40만원, 1년
	대규모기업	40만원, 1년	-
제 조 업	우선지원 대상기업	80만원, 2년	40만원, 2년
	중견기업	40만원, 2년	40만원, 1년
	대규모기업	40만원, 1년	-

● 지원 요건

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
3개월간 피보험자 수가 제도를 도입한 달
직전 3개월의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하여야 함

● 지원절차 : 사업계획서 승인 후 근로시간 단축 실시



| 전국고용센터 연락처

국번없이 1350

고용센터	연락처	고용센터	연락처
서울고용센터	02-2004-7379	통영고용센터	055-650-1811
서초고용센터	02-580-4973	대구고용복지센터	053-667-6031
서울동부고용센터	02-2142-8434	대구서부고용센터	053-605-6464
서울서부고용센터	02-2077-6002	대구달성고용센터	053-605-9518
서울남부고용센터	02-2639-2333	대구칠곡고용센터	054-970-1906
서울북부고용센터	02-2171-1800	경주고용복지센터	054-778-2516
서울강남고용센터	02-3468-4708	포항고용복지센터	054-280-3051
서울관악고용센터	02-3282-9366	구미고용센터	054-440-3364
인천고용센터	032-460-4815	영주고용센터	054-639-1146
인천북부고용센터	032-540-5742	문경고용센터	054-559-8231
인천서부고용센터	032-540-2052	안동고용센터	054-851-8062
부천고용센터	032-320-8952	광주고용센터	062-609-8652
김포고용센터	031-999-0940	광주광산고용센터	062-960-3209
고양고용센터	031-920-3988	전주고용센터	063-270-9201
의정부고용센터	031-828-0893	남원고용센터	063-630-3917
수원고용센터	031-231-7857	정읍고용센터	063-530-7501
성남고용센터	031-739-3173	익산고용센터	063-840-6523
안양고용센터	031-463-0767	김제고용센터	063-540-8404
안산고용센터	031-412-6942	군산고용센터	063-450-0655
평택고용센터	031-646-1264	순천고용센터	061-720-9169
춘천고용센터	033-250-1930	광양고용센터	061-798-1902
강릉고용센터	033-610-1913	여수고용센터	061-650-0140
속초고용센터	033-630-1909	목포고용센터	061-280-0542
원주고용센터	033-769-0960	해남고용센터	061-530-2911
태백고용센터	033-550-8633	대전고용센터	042-480-6019
삼척고용센터	033-570-1906	공주고용센터	041-851-8507
영월고용센터	033-371-6258	논산고용센터	041-731-8601
부산고용센터	051-860-1927	세종고용센터	044-861-8993
부산동부고용센터	051-760-7210	청주고용센터	043-230-6714
부산북부고용센터	051-330-9953	천안고용센터	041-620-7444
창원고용센터	055-239-0965	충주고용센터	043-850-4030
울산고용센터	052-228-1926	제천고용센터	043-640-9322
김해고용센터	055-330-6436	보령고용센터	041-930-6259
양산고용센터	055-379-2431	서산고용센터	041-661-5614
진주고용센터	055-760-6751	제주고용센터	064-710-4462
밀양고용센터	055-350-2804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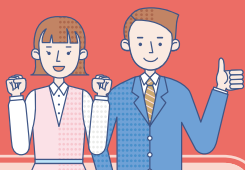


신규채용 인건비와
재직자 임금보전비용을
지원합니다



사업 개요

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 통해
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
신규채용 인건비와
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
지원합니다.



일자리 함께하기 제도

1. 근로시간 단축제

- ① 주 근로시간 단축제: 근로기준법 개정
(법률15513호)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
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
- ② 실 근로시간 단축제: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
2시간 이상 단축하고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

2. 교대제 도입 확대

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하여
근로자가 증가한 경우

3. 일자리 순환제

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빈 일자리에
신규고용을 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



**신규채용 인건비를
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**

근로자 수	1명 당, 1개월, 최대금액, 최대지원기간		
	52시간 적용기업 ^①	조기단축기업 ^②	노선버스업종 ^③
500명 초과	60만원, 1년		60만원, 1년
300~ 500명	제조업	80만원, 2년	
	기타업종	60만원, 1년	
300명 미만	제조업	80만원, 2년	80만원, 1년
	기타업종	80만원, 1년	

※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의 80% 한도로 지원



**재직자 임금감소액 보전비용을
월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.**

근로자 수	최대지원기간		
	52시간 적용기업 ^①	조기단축기업 ^②	노선버스업종 ^③
500명 초과	-	2년	1년
300~ 500명	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		2년
	기타업종	1년	
300명 미만	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	2년	2년
	기타업종	1년	

※ 사업주가 보전한 금액의 80% 한도로 지원

※ 증가근로자 수 1인당 기존재직자 10인까지 지원
(노선버스 업종의 경우 기존재직자 20인까지 지원)

- ① 특례제외업종의 경우 68시간 적용기업
- ② 조기단축기업이란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
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
- ③ 노선버스업종이 조기단축할 경우 조기단축기업의 예에 따라 지원

주 근로시간 단축제

● 지원 요건

- ① 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3개월간 기업의
주당 근로시간이 주 52시간*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
* 특례제외업종의 경우 68시간 이하로 유지
- ② 근로시간 단축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피보험자 수가
단축한 달의 직전 3개월*(기준단위기간)보다
증가하여야 함
* 다만, 기준단위기간은 사업장의 선택에 의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날이
속한달의 직전 4~6개월까지로 할 수 있음

● 지급주기 및 신청시기

- 3개월 단위로 지원
- 근로시간을 단축한 다음 달의
3개월 후 신청



〈예시〉근로시간 단축일이 7월 1일인 경우

- 증가근로자수
= [(8월 말+9월 말+10월 말 피보험자 수)/3]
- [(4월 말+5월 말+6월 말 피보험자 수)/3]
- 근로시간을 단축한 다음달부터 3개월 후인
11월에 지원금 신청(10월 급여 지급 후)

● 지원절차: 근로시간 단축한 다음달부터 3개월 후 신청서 제출

